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가단50207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문경익

변 론 종 결 2024. 8. 8.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1. 5. 31.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채무자 C에 대하여 대법원 2010. 8. 16. 선고 2010다48912 판결로 확정된 양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의 채권자이다. C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2021. 5. 31.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위 채권양도계약은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가 채권을 변제받는 등 양도채권이 소멸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채권에 대한 가액배상을 구한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그 단서에서 들고 있는 일정한 채무의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이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597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2013. 7. 18. 서울회생법원 2013하단7341호, 2013하면734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2. 15. C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위 면책결정에 첨부된 채권자일람표에는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면책결정을 받은 C은 파산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할 것이고, 면책의 효력을 받는 채무는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는 자연채무로 되어 소로써 그 이행을 구할 수 없고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C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D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것이고, C은 D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형사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57),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기 때문에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원고가 E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아 발생한 채권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청구는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주

별지